

2022년 제12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15 일

여수시장 2022.12.15



여수시 규칙 제800호

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여수시 규칙 제800호

##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4]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·요건 (제29조 관련)

부여기준	배점	비고
<b>1. 담당업무관련 창안,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기여(각종 상사업비 수상 포함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연간 10억원이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연간 3억원이상 10억원미만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연간 1억원이상 3억원미만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연간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</li> </ul>	0.6점 0.5점 0.4점 0.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원 : 3명 이내(예산절감 및 세수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)</li> <li>-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/ul>
<b>2. 국가예산 확보 기여(도비포함)</b>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가예산(도비 포함) 확보에 기여한 직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국·도비 합산 100억원이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국·도비 합산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국·도비 합산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국·도비 합산 5억원이상 10억원미만</li> </ul>	1.5점 1.0점 0.5점 0.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원 : 3명 이내(예산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)</li> <li>-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li>◦ 국고건의 신규사업, 공모, 생활밀착형 SOC 신규사업 중 국비, 도비 사업비만 포함</li> <li>◦ 균특회계(도자율), 연례반복사업 제외</li> <li>◦ 예산 확정 공문 통보 시 인정하며, 국도비 확보액은 충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함(신규 사업에 한함)</li> </ul>
<b>3. 업무 추진 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</b> <b>【중앙단위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1위 상당 수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2위 상당 수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3위 상당 수상</li> </ul> <b>【도단위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1위 상당 수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2위 상당 수상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3위 상당 수상</li> </ul>	0.6점 0.5점 0.4점  0.4점 0.3점 0.2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원 : 3명 이내(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)</li> <li>-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li>◦ 대상·최우수상 등 수상 명칭에 관계없이 시상 계획상 1·2·3위에 해당되면 가산점 부여 (시상계획 관련 공문 제출)</li> <li>◦ 민간기관 단독 주관 또는 민간·공공기관 공동주관하는 시상은 가산점 적용 제외</li> </ul>
<b>4. 정부합동평가결과 우수자</b> <b>【전남도 목표달성을 지표 중 22개 시·군별 여수시 순위 1~3위 해당 우수지표 - 정량평가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1위 지표 (가중치 지표)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2위 지표 (가중치 지표)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3위 지표 (가중치 지표)</li> </ul> <b>【전국 우수사례 선정(도 후보) 지표 - 정성평가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radio"/> 전국 우수사례 선정</li> <li><input type="radio"/> 도 우수사례 후보</li> </ul>	0.3점(0.6점) 0.2점(0.4점) 0.1점(0.2점)  0.6점 0.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원 : 3명 이내(우수지표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)</li> <li>-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/ul>

부 여 기 준	배 점	비 고
<b>5. 격무·기피팀 근무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1년 경과후부터 1개월마다 0.05점씩 가산	2점 한도	◦ 근무평정일 기준 최근 선정된 격무·기피팀 근무시 가산점을 부여하며, 가산점을 이미 부여받은 기간은 공제하여 산정함
<b>6. 감사 및 반부패·청렴 관련 우수공무원 표창</b> <input type="radio"/> 장관급 이상 <input type="radio"/> 도지사	0.5점 0.3점	
<b>7. 공무원 시책연구모임 우수성과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최우수상 (1위) <input type="radio"/> 우수상 (2위) <input type="radio"/> 장려상 (3위)	0.3점 0.2점 0.1점	◦ 팀장 및 팀원 개인별 실적가산점 부여
<b>8. 부패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신고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직무관련 금품·향응 수수 행위 및 공금횡령 신고자 (매회) <input type="radio"/> 금품반환 신고자 (1 ~ 2회) (3회 이상)	0.4점 0.4점 0.6점	◦ 감사부서 부패신고 등 접수대장에 의함 (사실조사 결과 근거)
<b>9. 다 자녀 출산 공무원</b> <input type="radio"/>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 <input type="radio"/> 셋째 자녀 출산 공무원 ※ 부부 공무원의 경우 2명 모두 인정	1.0점 0.7점	◦ 출산 후 근무중 처음 도래하는 근무 평정시부터 당해 직급에 대해 적용
<b>10. 각종 대회의 주도적 유치</b> <input type="radio"/> 국제 대회 <input type="radio"/> 전국 대회 <input type="radio"/> 도단위 대회	1.0점 0.5점 0.3점	◦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에 한하며 유관기관, 단체 등 과 연계되는 통상적인 행사는 제외
<b>11. 단체업무(공노조) 담당 공무원</b> <input type="radio"/> 2년 이상 <input type="radio"/>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<input type="radio"/>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	0.3점 0.2점 0.1점	
<b>12. 청백봉사상·민원봉사대상 대상수상자</b>	1.0점 이내	◦ 당해 직급 수상에 한함
<b>13.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</b> <input type="radio"/> 「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별표3 규정에 의한 배점부여 ※ 민자사업 유치 (50억원 이상, 1개소 이상) 중소기업 유치 (20억원 이상, 1개소 이상)	1.0점 ~ 0.2점	◦ 투자사업 발굴에서 사업실현(착공)까지 적극 적인 활동과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함
<b>14. 나눔누리 사랑봉사단 평가결과 우수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최우수상 (1위) <input type="radio"/> 우수상 (2위)	0.3점 0.2점	◦ 팀원 전원 개인별 실적가산점 부여

부여기준	배점	비고
<b>15. 중앙부처 및 도, 관외 타기관 파견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3년 이상 <input type="radio"/> 2년 이상 <input type="radio"/> 1년 이상	3점 2점 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여수소재 기관 파견, 교육파견 제외</li> <li>◦ 당해직급에 한함</li> <li>※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, 남은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.</li> </ul>
<b>16. 시정 제안 채택 공무원</b> <input type="radio"/> 금상 (1위) <input type="radio"/> 은상 (2위) <input type="radio"/> 동상 (3위)	0.5점 0.3점 0.1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업무관련 창안 채택자에 한함</li> <li>- 공동제안의 경우 2인까지 가산점 부여 하되, 부제안자 1인은 주제안자의 1/2 인정 (당해직급 수상에 한함)</li> </ul>
<b>17. TOP성과 우수부서 지표(분야별 1위)</b> <input type="radio"/> 일반행정, 복지환경, 지역개발, 읍면동	0.3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인원 : 3명 이내(우수부서지표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무원)</li> <li>- 해당 업무 3개월 이상 근무자</li> </ul>
<b>18. 인구유입 실적 우수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21명 이상 <input type="radio"/> 16명 ~ 20명 <input type="radio"/> 11명 ~ 15명 <input type="radio"/> 6명 ~ 10명 <input type="radio"/> 3명 ~ 5명	0.5점 0.4점 0.3점 0.2점 0.1점	
<b>19.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</b> <input type="radio"/>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의결된 경우에 한함	2.0점 이내	
<b>20. 기타 특수 공적으로 실적가산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</b> <input type="radio"/> 조직의 혁신적 공헌, 시 이미지 제고, 특별·현안과제 업무추진 등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	1.0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실적에 따라 타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및 배점 준용</li> </ul>

#### ※ 비고

- 평정대상기간 중의 실적에 대하여 부여한다. 단, 직전 평정대상기간 중에 해당실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평정대상기간 중에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항 목에만 반영한다.(이중 적용은 불가)
- 실적 가산점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,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반영한다